



재정통계 BRIEF

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in BRIEF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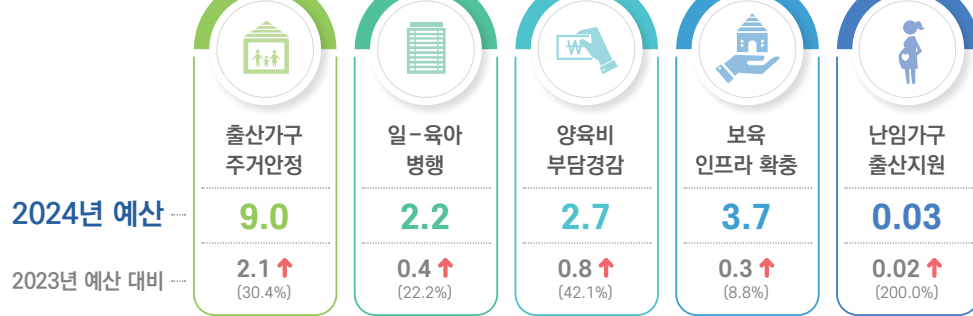
01 재정통계

3 출산 및 육아

• 2024년 예산에서 선별된 20대 핵심과제 중 출산 및 육아 관련 주요 재정사업 소개

출산 및 육아 재정지원 사업

단위 : 조원



※ 자료 :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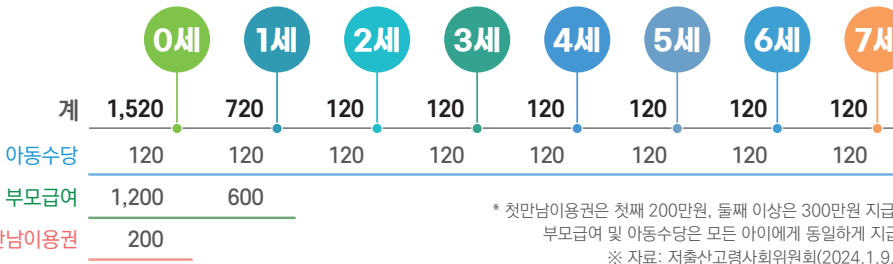
2024년 달라지는 내용

핵심사업	주요 내용
출산가구 주거안정	•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·전세자금 융자 소득조건 상향, 분양임대 우선공급 지원
일-육아병행	•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 • 육아기 단축급여 지원 자녀연령은 8세에서 12세 이하로, 급여는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,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
양육비 부담경감	• 부모급여 0세 70만원에서 100만원, 1세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 지원 등
보육 인프라 확충	• 0~2세 영유아 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 5% 인상 •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전년대비 1,285개소 확대된 2,315개소 운영
난임가구 출산지원	• 임신·출산 희망가구에 난임 검진·시술 등 신규 지원 • 고위험 임신부,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• 모자건강을 상담해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75개소로 증가, 난임·출산 우울증 심리 정서지원센터 10개소로 확대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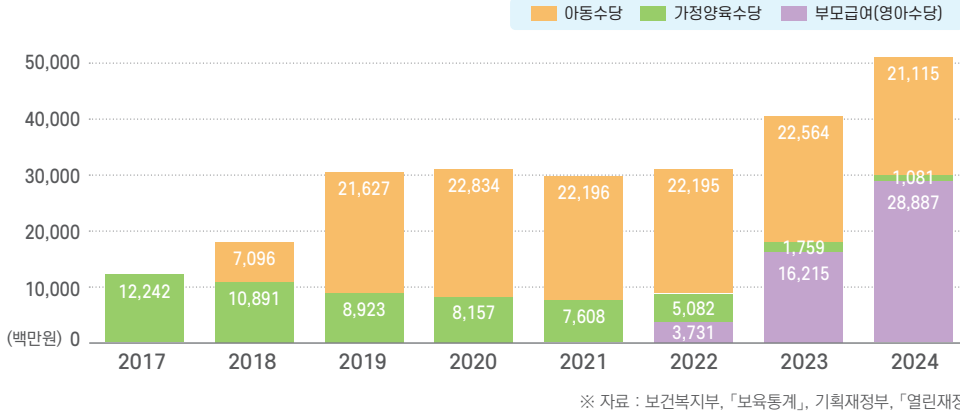
※ 자료 :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

2024년 7세 이하 영아 1인당 정부지원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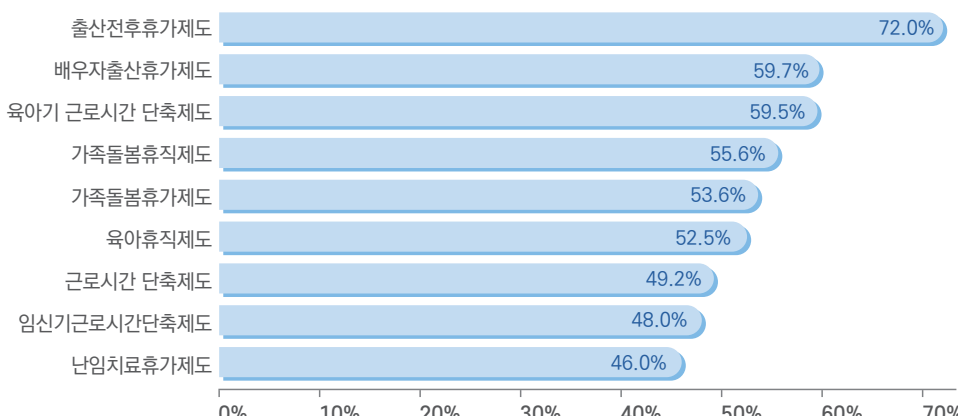
단위 : 만원



영유아기 지원 수당 규모



출산·육아 관련 제도 사용 비율(2022년 기준)



출산·양육 관련 주요사업

주택구입·전세자금(용자)

국토교통부 / 주택도시금융

지원목적 | 무주택 서민층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의 원활한 지원 및 저소득 서민에 대한 전월세 자금 지원으로 자금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생활 영위

참여대상 | 신생아 특례 대출: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(‘23.1.1이하 출생아 부터 적용)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(대환대출)로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, 순자산가액 4.69억원 이하

대출금리 | 1.6~3.3%

대출기간 및 한도 | 10년, 15년, 20년, 30년으로 최대 5억원 이내

신청방법 | 시중은행 4개(우리, KB국민, 신한, KEB 하나), 지방은행 2개(대구, 부산), 특수은행 1개(농협)에서 신청

모성보호육아지원

고용노동부 / 고용보험기금

지원목적 | - 출산전후·유산사산휴가급여: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,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
- 육아휴직급여: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
-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: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·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
- 배우자 출산휴가급여: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

지원대상 | - 출산전후·유산사산휴가급여: 임신중인 여성 또는 임신중 유산·사산한 여성
- 육아휴직급여: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,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
-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
- 배우자 출산휴가급여: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

지원내용 |

구분	지 원 내 용
출산전후·유산사산 휴가급여	- 최초 60일: 정부에서 최대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 또는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210만원의 차액분 지급 - 마지막 30일: 정부가 통상임금을 지급(최대 210만원)
육아휴직급여	-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월통상임금의 80%(상한 150만원, 하한 70만원) 지급 -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(200~250만원) 지급
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	-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•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%(상한 200만원, 하한 50만원) x 5(단축전 소정 근로시간) •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%(상한 150만원, 하한 50만원) x ((단축전 소정근로시간 - 단축후 소정근로시간-5)/단축전 소정근로시간)
배우자 출산휴가급여	-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 통상임금 지급 • 최초 5일: (정부) 최대 401,910원의 배우자 출산급여 지급 (사업주) 통상임금과 401,910원의 차액분 지급 • 나머지 5일: 사업주가 5일분(통상임금 100%) 지급

고용안정장려금

고용노동부 / 고용보험기금

지원목적 |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, 일·가정 양립환경 개선지원,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재직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

주요내용 |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및 이와 관련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

지원내용 | - 육아휴직 지원금: 월 30만원(만 12개월 이내 자녀대상 첫 3개월은 월 200만원 지원)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: 월 30만원(인센티브 적용시 월 10만원 추가 지급)
- 대체인력 고용: 월 80만원(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)

신청방법 | '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' 지급신청서,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,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

부모급여(영아수당) 지원

보건복지부 / 일반회계

지원목적 |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,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

지원대상 | 만 0~1세 아동(2022년생부터)

지원내용 | 만 0세 아동 월 100만원, 만 1세 아동 월 50만원 현금(신청계좌로 입금), 다만,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며 차액은 신청계좌로 입금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

지원서비스	부모급여(현금)	어린이집 이용시	종일제아이돌봄 이용시
만 0세	100만원	바우처 54만원 + 현금 46만원	종일제 정부지원금 지원 (차액은 현금 지급)
만 1세	50만원	바우처 47.5만원 + 2.5만원 지원	

신청방법 |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(www.bokilro.go.kr) 및 정부24를 통해 신청

영유아보육료 지원

보건복지부 / 일반회계

지 원 목 적 |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 도모

지 원 대 상 |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(0~5세반)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자

지원금액 및 시기 |

구분	연령(적용시기)				
	0세반	1세반	2세반	3~5세반 (24.1.1~2.29)	3~5세반 (24.3.1~)
부모보육료	540	475	394	280	280
기관보육료	629	342	232	-	-

(월 기준, 단위: 천원)

신 청 방 법 |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(www.bokilro.go.kr)를 통해 신청

모자보건사업

보건복지부 / 국민건강증진기금

지 원 목 적 | - 모자보건사업: 건강한 임신·출산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
- 난임부부 지원: 난임부부 대상 정서적 지원,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관리,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을 통한 난임부부 지원

지원신청자격 |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로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부부

지 원 범 위 | 체외수정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, 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 등 비급여 3종

지원시술 횟수 | 신선배아 최대 9회, 동결배아 최대 7회, 인공수정 최대 5회

신 청 방 법 |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